

【 문제-1 】 (30점)

甲은 A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현재까지 3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A는 피고 1에 대하여 50억 원, 피고 2에 대하여 20억 원, 피고 3에 대하여 12억 원, 피고 4에 대하여 12억 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피고 1은 11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 피고 4는 각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계속 중에 乙은 A에 대하여 1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A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乙에게 피고 1은 9억 원, 피고 2는 4억 원, 피고 3은 2억 원, 피고 4는 2억 원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甲이 진행하는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의 피고 1 내지 4에 대한 각 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시오. (10점)
- (2) 甲과의 관계에서 乙이 위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문제-2 】 (20점)

피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甲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A)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甲은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아울러 청구를 확장하였는바, 환송전 항소심법원(B)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여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항소법원(B)의 판결에 대하여 甲만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甲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항소심법원(B)의 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甲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이 환송 후 항소심법원(C)에 계속 중 피고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1) 파기환송 후 피고의 항소취하에 대한 효력을 설명하시오. (10점)
- (2) 피고의 항소취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내려진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乙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채무자 乙과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분을 乙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丙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9. 5. 4.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보는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乙과 丙에게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전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乙과 丙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甲은 2019. 4. 15.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乙과 丙을 상대로 위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소장부분과 변론기 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0. 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보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乙과 丙은 위 후소의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20. 11. 1. 위 후소판결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됨으로 인해 비로소 위 후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20. 11. 6. 乙과 丙은 위 후소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의 항소심 계속 중 2021. 7. 1. 甲은 위 전소 제1심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乙과 丙은 이러한 자료들을 송달받고 2021. 7. 5.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한 검색을 통하여 전소 제1심 재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甲의 후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만약 위 후소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전소 변론종결 전에 乙이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 乙은 2021. 7. 13., 丙은 같은 달 29. 각각 전소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하시오. (20점)

【 문제-4 】 (20점)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의무가 집행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한 전보배상으로서 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1) 위 병합의 형태에 관해 설명하고, 병합 제기된 위 소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하시오. (10점)

- (2)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甲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의 심리 결과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어 두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